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3.7)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연석

## 목 차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5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현행)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월 8만원), 전몰군경의 유족(월 5만원)
  - (변경) 명예수당 : 월 8만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1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18백만원(2014년도 추경 확보 계획)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01. 09. ~ 2014. 01. 29.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검토의견

- 국가보훈대상자인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899호, 2013.7.16,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2. 개정이유

-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군민의 날을 변경함(안 제2조)
  - (현행)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변경)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1. 27. ~ 2.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 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변경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2. 개정이유

-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으로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위원의 임기를 변경함(안 제9조제5항)
  - (현행) 1년
  - ⇒(변경)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
- 나. 용어를 순화함
  - 제반 ⇒ 모든, 자 ⇒ 사람, 인 ⇒ 명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1. 27. ~ 2. 1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7.\]](#)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2. 제정이유

-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향우회 :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

### 나.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출향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
  - 군정시책 홍보
  -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2014년 1회 추경시 30백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3. 12. 17. ~ 2014. 01. 06.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

- “향우회”란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으로 규정.

○ 안 제3조(출향인의 지위)

- 출향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4조(지원내용)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군정시책 홍보
-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안 제5조(포상)

-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창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2. 28.

## 2. 개정이유

-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인 ⇒ 명
  -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거 ⇒ ~ 에 따라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 나. 예산조치 : 2014년 1회 추경시 14,0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4. 2. 3. ~ 2014. 2. 23.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사유서 붙임

## 5. 검토의견

가.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5조 제3항 신설

-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인” ⇒ “명”, “기타” ⇒ “그 밖의”,

- “규정에 의거” ⇒ “~ 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